

1. 개정이유

「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(‘22.8.)」 후속조치 등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속도감 제고를 위하여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한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(안 제5조)

공공주택특별법령 및 제도 운영 업무를 공공택지기획과 소관 사무로 하고, 일관성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안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적용하는 보안 업무를 공공택지조사과 소관 사무로 일부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공공주택특별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인사·서무·보안·감사·통계”를
“인사·서무·보안(일반)·감사·통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
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
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후보지 보안(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)에 관한 사항

부 칙 <제1565호, 2022.11.14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사무분장) ① (생략)	제5조(사무분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공택지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②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2. <u>공공주택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</u>
2. ~ 8. (생략)	3. ~ 9. (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9. <u>인사·서무·보안·감사·통계 등에 관한 사항</u>	10. <u>인사·서무·보안(일반)·감사·통계 ---</u>
10. (생략)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 공공택지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③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공공주택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</u>	<u><삭제></u>
3. ~ 12. (생략)	2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
④ 공공택지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9. <u>후보지 보안(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</u>

⑤・⑥ (생략)	<u>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 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)에 관한 사항</u> ⑤・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	--